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하는 도급자 중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, 소방시설설계 용역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기간을 설계 용역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함(안 제20조의2제4항)
- 나. 소방시설설계 용역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기간을 설계 용역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(안 제20조의2제2항제2호가목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“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”을 “소방시설 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법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2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
3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(이하 “공기업 등”이라 한다)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
4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
5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(다만,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

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도급비용 계상,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용역 또는 공사부터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고, 소방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2(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) ① (생략)	제20조의2(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·기간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가입 기간: 용역 또는 공사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	2. ----- ----- --
가. 소방시설설계 용역: <u>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</u>	가. ----- <u>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-----</u>
나. ~ 라. (생략)	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법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서 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</u> 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
	1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	2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

④ (생략)	<u>연기관</u> 3. <u>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(이하 “공기업등”이라 한다)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</u> 4. <u>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</u> 5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자(다만,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)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------------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소방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502